

의안번호	2210928
의 퇴 인	신장식 의원
회 답 일	2025. 7. 24.
추계번호	25B329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u>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u>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함 ※ 공공비축양곡을 시장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평년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함	의무규정
2	안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함)을 세워야 함(제1항) ※ 양곡수급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양곡수급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신설>	의무규정
3	안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함(제1항) ※ 양곡매입가격 등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함(제2항)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함. <u>이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은 국내 소비량과 국제 식량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으로 함(제1항 후단 신설)</u>	의무규정
		<u>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가격은 평년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함(제3항)</u>	
		※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매입가격을 현행 시장가격에서 평년가격으로 개정함	
8	안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신설)	
9	안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함)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제4항)	
10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신설>	재량규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항)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정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정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u>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2조제8호에 따른 적정가격의 고시,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2	안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하여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3	안 제16조의5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16조의6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재량규정
15	안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함 ※ 미곡유통업 육성을 양곡유통업 육성으로 확대하면서 양곡유통업 육성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22조의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재량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3호(정의)	제3호 -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	• 미대상 - 법 시행령에서 공공비축양곡으로 정하고 있는 밀 및 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일정 규모의 미곡, 밀, 콩을 매입 중 ※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
		제3호 - 공공비축양곡을 평년 가격에 매입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1항 - 양곡수급계획 범위 확대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항 - 양곡수급관리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6조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제2항 제3호 신설 - 적정 재고량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2항 제3·4호 신설 - 용도별 운용 -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 미대상 -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의무수입양곡은 용도별(밥쌀용, 가공용)로 수입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TRQ 쌀 국가별 도입현황 참고 -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용역비용이 일부 소요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량·재배면적·소비량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3]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참고(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 미대상 - 개정안은 양곡매입가격 등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6조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미대상 -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6조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신설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개정안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명: 농업이차보전(세부사업)-쌀가공산업육성지원(내역사업)-쌀가공산업육성지원 도정·보관분야(내내역사업) - 1개소당 평균 지원금액('24년 선정업체 기준): 382백만원 ※ 지방비 부담률 없음 ※ [참고자료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신축,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참고														
6	안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¹⁾을 구축하여 2021년 6월부터 본격 운영중이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자료 6]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참고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2020~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td><td>4,397</td><td>1,171</td><td>462</td><td>574</td><td>575</td><td>597</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4,397	1,171	462	574	575	597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4,397	1,171	462	574	575	597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0조 (공공비축 양곡의 비 축·운용)	제1항 － 공공비축양 곡 비축물 량을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는 기 준 이상으 로 유지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항 － 공공비축양 곡 매입가 격을 현행 시 장 가 격 에서 평년 가 격 으 로 개정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항 및 제4 항 － 공공비축양 곡 매입물 량 등 결정 시 양곡수 급관리위원 회 심의 － 공공비축양 곡 운용 비 용을 양곡 관리특별회 계에서 지 출	• 미대상 －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 면, 현행법 제16조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이며,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 회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지출 중으로, 개정안에 따 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할 경우 회계·기금 간 재 원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총 지출 규모는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공공비축양곡 매입 예산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회계·기금</th><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 rowspan="3">양곡관리 특별회계</td><td>정부양곡매입비 (2131-360)</td><td>1,407,728</td><td>1,712,421</td><td>1,732,193</td></tr><tr><td>－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td><td>370,183</td><td>485,823</td><td>545,211</td></tr><tr><td>－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매입비(미곡)</td><td>1,037,545</td><td>1,226,598</td><td>1,186,982</td></tr><tr><td>농산물가격 안정기금</td><td>비축지원 (3031-323) (밀과 콩 포함)</td><td>686,750</td><td>724,875</td><td>812,532</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Ⅱ-1), 2025.1.	회계·기금	사업명	2023	2024	2025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부양곡매입비 (2131-360)	1,407,728	1,712,421	1,732,193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370,183	485,823	545,211	－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매입비(미곡)	1,037,545	1,226,598	1,186,98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비축지원 (3031-323) (밀과 콩 포함)	686,750
회계·기금	사업명	2023	2024	2025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부양곡매입비 (2131-360)	1,407,728	1,712,421	1,732,193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370,183	485,823	545,211																				
	－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매입비(미곡)	1,037,545	1,226,598	1,186,98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비축지원 (3031-323) (밀과 콩 포함)	686,750	724,875	812,532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8	안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 미대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농산물 유통소비 정보조사(3031-324)’ 사업(유통실태조사, 수입정보조사 등) 예산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 · 202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입쌀이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용역비용 2,000만원 ·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입쌀 국내 유통현황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비용 1억 2,000만원
9	안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 제도)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 제3호
14	안 제16조의6(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신설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 위원회) 신설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제5항²⁾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³⁾에 따라 운영 중인 양곡수급안정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유통·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중(2020.9.2, 출범) － 농식품부(차관(위원장), 식량정책관, 기재부(민생경제정책관), 유관기관(농협경제지주, 농경연) 생산자단체(5명), 유통인단체(3명), 소비자단체(2명), 학계·전문가(2명)
12	안 제16조의4(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료용 쌀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신설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3	안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내에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연구」 용역* 완료(’24.2월) 후,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용역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내역</th></tr><tr><td> • 시스템 개발 (700백만원) </td><td> ① 쌀 생산량 예측 Data 전처리, DB 구축, 모델 고도화 ② 쌀 수요·공급 예측 AI 모델링 ③ Data 시각화 제작 및 web base 기반 활용 시스템 구축, Python을 활용한 Data 전처리 프로그램 제작(구축 및 온라인 테스트 과정 포함) </td></tr><tr><td> • 장비 구입 (300백만원) </td><td> ① (SW) Data 수집(웹페이지,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등) ② (SW) Data 처리·보관(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전처리 DB 구축, AI 모델 개발·운영 소프트웨어 비용) ③ (SW) Data 분석 및 시각화(AI 적용 소프트웨어 및 웹 기반 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등) ④ (HW) Data 분석 하드웨어 구축(통합 메모리, 저장 장치, 백업 서버, 서버 보안 프로그램 등) </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구분	내역	• 시스템 개발 (700백만원)	① 쌀 생산량 예측 Data 전처리, DB 구축, 모델 고도화 ② 쌀 수요·공급 예측 AI 모델링 ③ Data 시각화 제작 및 web base 기반 활용 시스템 구축, Python을 활용한 Data 전처리 프로그램 제작(구축 및 온라인 테스트 과정 포함)	• 장비 구입 (300백만원)	① (SW) Data 수집(웹페이지,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등) ② (SW) Data 처리·보관(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전처리 DB 구축, AI 모델 개발·운영 소프트웨어 비용) ③ (SW) Data 분석 및 시각화(AI 적용 소프트웨어 및 웹 기반 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등) ④ (HW) Data 분석 하드웨어 구축(통합 메모리, 저장 장치, 백업 서버, 서버 보안 프로그램 등)
구분	내역							
• 시스템 개발 (700백만원)	① 쌀 생산량 예측 Data 전처리, DB 구축, 모델 고도화 ② 쌀 수요·공급 예측 AI 모델링 ③ Data 시각화 제작 및 web base 기반 활용 시스템 구축, Python을 활용한 Data 전처리 프로그램 제작(구축 및 온라인 테스트 과정 포함)							
• 장비 구입 (300백만원)	① (SW) Data 수집(웹페이지,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등) ② (SW) Data 처리·보관(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전처리 DB 구축, AI 모델 개발·운영 소프트웨어 비용) ③ (SW) Data 분석 및 시각화(AI 적용 소프트웨어 및 웹 기반 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등) ④ (HW) Data 분석 하드웨어 구축(통합 메모리, 저장 장치, 백업 서버, 서버 보안 프로그램 등)							
15	안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6	안 제22조의2(양곡의 수요 개발 및 소비촉진) 신설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naqs.go.kr/rice/hmpg/main/index.do>>
- 2) 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3)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상세 사유

가.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계획의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 공공비축양곡 매입가격 변경(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고, 일정량의 의무수입양곡을 수입하고 있음

- 당해연도 보관·판매 등 관리 비용은 실제 정부 재고 등을 토대로 편성중
 - (공공비축양곡) 현재 FAO 권고, 국내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쌀 소비량의 17~18% 수준인 70~80만톤 수준을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공공비축양곡 재고 관리중

※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

- (수입양곡) 쌀 관세화 유예 종료('95~'14) 및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에 따라 '14년분 의무수입물량(40만 9천톤)을 TRQ(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하고, 매년 40만 9천톤 수입중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TRQ 쌀 국가별 도입현황 참고

□ 개정안에 따라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에서 평년가격으로 변경하고, 양곡수급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며, '적정 재고관리'를 위한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 매입가격 변동, 양곡수급계획 대상의 확대,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매입비 및 보관비용 변동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평년가격: 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안 제2조제3호)

□ 그러나 현 시점에서 향후 양곡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중요사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⁴⁾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양곡수급계획 범위 변경으로 인한

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물량 변동 등을 알 수 없으며,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실제 재고량은 연도별 쌀 수급상황(생산량 및 수요량)과 연동하여 변동할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나.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안 제10조제1항)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경우 국내 소비량과 국제 식량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유지하되, 그 기준은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비축양곡을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 중임

－ (공공비축양곡) 현재 FAO 권고, 국내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쌀 소비량의 17~18% 수준인 70~80만톤 수준을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공공비축양곡 재고 관리중

－ 당해연도 보관·판매 등 관리 비용은 실제 정부 재고 등을 토대로 편성중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매년 9~1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로 발표 중⁵⁾

• 포대벼(건조벼):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⁶⁾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포장재 및 포장임)을 제외한 비용

※ [참고자료 2]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

4) 안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5) 예를 들어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금은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8호, 2024.10.23.)을 따름. 참고로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및 산물벼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음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포대벼

$$\text{매입가격 (포대벼 40kg)} = [\text{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text{가공임(8,258원)}] \times \frac{40\text{kg}}{80\text{kg}} \times \frac{72\%}{(\text{도정수율})}$$

• 산물벼

$$\text{산물벼(40kg) 매입가격} = \text{포대벼(40kg) 매입가격} - \text{포장비용}^*(811\text{원}/40\text{kg})$$

*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

6)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비축 물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연도별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다. 양곡가격안정제도(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적정가격:**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양곡의 생산비,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 개정안에 따른 차액 지급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품목별 양곡 생산량 및 시장가격, 품목별 양곡 시장가격의 적정가격 미달 여부, 차액[=적정가격-시장가격]의 지급비율(전부 또는 일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품목별 양곡 가격 차액보전})_{i,t}$$
$$= \sum_{i,t} [\text{양곡 적정가격} - \text{양곡 시장가격}]_{i,t} \times \text{지급비율}_{i,t} \times \text{대상 물량}_{i,t}$$
 - 이때, [양곡 적정가격 - 양곡 시장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는 추계기간 5년, i는 지원대상 양곡 품목(예: 쌀, 밀, 콩 등)

- 그런데 지원대상 양곡 품목 및 물량, 품목별 양곡 적정가격 및 시장가격, 지급비율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은 대상품목, 적정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변동직접지불제를 운영한 바 있음([참고자료 5] 변동직접지불제 참고)

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안 제16조의6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을 포함하고, 특히 미곡의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미곡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매년 9~1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로 발표 중⁸⁾

• 포대벼(건조벼):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⁹⁾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포장재 및 포장임)을 제외한 비용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8) 예를 들어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금은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8호, 2024.10.23.)을 따름. 참고로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및 산물벼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음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포대벼

$$\text{매입가격 (포대벼 40kg)} = [\text{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text{가공임(8,258원)}] \times \frac{40\text{kg}}{80\text{kg}} \times \frac{72\%}{(\text{도정수율})}$$

• 산물벼

$$\text{산물벼(40kg) 매입가격} = \text{포대벼(40kg) 매입가격} - \text{포장비용} * (811\text{원}/40\text{kg})$$

*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

9)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표 1] 개정안에 따른 미곡 가격 위기상황 시의 대책

조항	위기상황	대책
안 제16조제4항제1호	미곡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 이때,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매입
안 제16조제4항제2호	미곡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또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입·판매한 미곡의 판매 손실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연도 전체 미곡 생산량 및 수급조절용 미곡 규모, 차액 규모(=매입가격-판매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수급조절용 미곡 매입·판매 손실 보전 금액 등})_t \\
 &= \sum_t [\text{수급조절용 미곡 규모} \times (\text{미곡 매입가격} - \text{미곡 판매가격})]_t + \alpha_t
 \end{aligned}$$

- 이때, (미곡 매입가격 - 미곡 판매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 는 추계기간 5년
- α_t 는 행정비용, 보관료, 운송료 등 제경비

□ 그런데 쌀 생산량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해당연도에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양곡 물량 및 양곡 가격, 대상 품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쌀 초과생산량,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등은 [참고자료 7]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참고자료 8]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참고

마.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안 제16조의 4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논타작물(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논타작물 품목군별 재배면적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논타작물 재배면적}_{i,t} \times \text{지원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논타작물 품목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논타작물 재배면적, 품목별 면적당 지원단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0년 한시적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¹⁰⁾을 실시한 바 있음([참고자료 9]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참고)

바. 양곡유통업의 육성(안 제22조)

□ 개정안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미곡을 포함한 ‘양곡유통업’으로 변경하

10)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2018~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한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2019				2020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이·전용 (B)	집행액 (C)	집행률 [C/(A+B)]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 (B/A)
136,829	67,880	49.6	150,479	△59,700	83,682	92.2	54,992	54,989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양곡유통업 육성 주체에 포함하고,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 시설 설치¹¹⁾ 및 양곡 매입 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양곡유통업 관련 양곡매입 자금 투입 여부, 양곡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 시설의 설치 및 관련 예산 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미곡유통 육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략작물산업화(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등을 통해 콩종합처리장, 밀건조·저장시설 등 양곡유통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¹²⁾

- [참고자료 10]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현황

[참고자료 11] 전략작물산업화 예산 현황: 2024~2025년 참고

사.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안 제22조의2 신설)

11)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콩종합처리장(SPC) 및 밀건조·저장시설 현황 및 향후 수요는 다음과 같음

<콩종합처리장(SPC) 및 밀건조·저장시설 현황 및 향후 수요>

시설	현황 및 향후 수요
콩종합처리장(SPC)	• '24년 기준 전국의 콩 종합처리장(SPC)는 23개소로 '24년 생산량 155천톤 중 약 82천톤을 처리(추정) • '27년 생산목표인 147천톤을 기준으로 65천톤~70천톤의 처리능력 확대 필요 - 처리능력 3.6천톤급 SPC 18~20개소 추가 설치 필요
밀건조·저장시설	• '24년 선정된 전국 밀 건조·저장시설은 3개소(저장능력 1.5천톤)로 '24년 생산량(37.4천톤)의 약 4.0% 수준 처리 가능 • '26년 생산목표인 67천톤 저장을 위해 66천톤 저장시설 필요 - 저장능력 3천톤 규모 시설 22개소 추가 설치 필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12) 미곡유통 육성 및 양곡유통 관련 예산 현황: 2022~2025년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 촉진 등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 사용기업에 대해 국산 원료 구매자금 및 제품개발·판로확대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산양곡 사용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참고자료 1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관련 예산 현황: 2024~2025년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미곡유통 업 육성 관련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2131-430)					
	-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노후화된 가공시설의 시설현대화 지원	8,400	8,400	6,360	6,36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16,162	15,021	11,840	15,320
	-RPC쌀산업기여도평가	RPC 매입자금 차등지원을 위한 평가비용	405	405	405	405
양곡유통 관련	전략작물산업화 (2131-351) (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및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 통합)					
	-사업다각화 지원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	6,208	8,183	7,134	6,1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2019~2024년) 및 계획(2025년)>

(단위: 톤, 원/kg, 백만원)

공공비축양곡		미곡 ¹⁾		밀 ²⁾	콩 ³⁾
		포대벼	산물벼		
2019	매입량(톤)	269,767	80,231	10,201	16,767
	매입단가(원/kg)	2,375		975	4,500
	매입금액(백만원)	996,946		9,924	73,993
2020	매입량	249,328	81,744	853	557
	매입단가	2,706		975	4,500
	매입금액	875,333		859	2,821
2021	매입량	257,078	92,899	8,401	2,248
	매입단가	2,677		975	4,700
	매입금액	913,080		8,600	11,722
2022	매입량	321,980	128,020	16,561	18,697
	매입단가	2,341		975	4,700
	매입금액	1,017,375		18,955	87,458
2023	매입량	289,058	110,706	18,892	32,524
	매입단가	2,535		975	4,800
	매입금액	991,575		20,343	154,429
2024	매입량	450,000(p)		17,882	49,770
	매입단가	2,309		1,000	4,800
	매입예산	1,226,598		18,838	258,236
2025 (p)	매입계획량	450,000		30,000	30,000
	매입예산단가	2,527		855	4,800
	매입예산	1,186,982		33,858	153,180

주: 2019~2023년 결산 기준/ 2024년 매입실적 작성/ 2025년 예산 기준

1) 미곡: 미곡매입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2) 밀: (매입량·매입금액) 2019~2023년 해당연도 국산 밀 매입 및 정산 결과 기준(aT), 2024년 예산 기준 / (매입단가) 2019~2023년 국산 밀 양호 기준, 2024년 국산 밀 제면용 1등 기준

3) 콩: 연산 기준으로 작성, 매입금액은 물품대 기준, 매입단가는 대립종 특등 기준 수매단가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TRQ 쌀 국가별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5.3. 기준, 단위: 톤, 백미기준)

연분	원산지	가공	밥쌀	합계	비율
2019	미국	97,188	37,000	134,188	33%
	베트남	95,112	3,000	98,112	24%
	중국	176,400	—	176,400	43%
	태국	—	—	—	—
	호주	—	—	—	—
	소계	368,700	40,000	408,700	100%
2020	미국	93,804	38,500	132,304	32%
	베트남	55,112	—	55,112	14%
	중국	172,790	—	172,790	42%
	태국	26,994	1,500	28,494	7%
	호주	—	—	—	—
	인도	20,000	—	20,000	5%
	소계	368,700	40,000	408,700	100%
2021	미국	90,804	41,500	132,304	32%
	베트남	54,112	1,000	55,112	14%
	중국	157,195	—	157,195	38%
	태국	46,994	1,500	48,494	12%
	호주	15,595	—	15,595	4%
	소계	364,700	44,000	408,700	100%
2022	미국*	26,190	10,000	36,190	12%
	베트남	64,012	1,000	65,012	21%
	중국	157,195	—	157,195	50%
	태국	35,594	3,000	38,594	12%
	호주	15,595	—	15,595	5%
	소계	298,586	14,000	312,586*	100%
2023	미국	92,304	40,000	132,304	32%
	베트남	59,212	900	60,112	15%
	중국	157,195	—	157,195	38%
	태국	40,394	3,100	43,494	11%
	호주	15,595	—	15,595	4%
	소계	364,700	44,000	408,700	100%
2024	미국	92,304	40,000	132,304	32%
	베트남	74,212	900	75,112	18%
	중국	157,195	—	157,195	38%
	태국	25,394	3,100	28,494	7%
	호주	15,595	—	15,595	4%
	소계	364,700	44,000	408,700	100%
2025 계획	미국	92,304	40,000	132,304	32%
	베트남	54,212	900	55,112	13%
	중국	157,195	—	157,195	38%
	태국	25,394	3,100	28,494	7%
	호주	15,595	—	15,595	4%
	글로벌	20,000	—	20,000	5%
	소계			408,700	100%

* (2022연분) 미국 캘리포니아 가뭄으로 미국 수출물량 부족

[참고자료 3]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¹³⁾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단위: %)

품 목	'27년 목표치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7.0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쌀	98.0
보 리	34.6 / 33.1
밀	8.0 / 5.0
콩	43.5 / 11.6
옥수수	8.2 / 1.7
서 류	109.5 / 102.5
축산물(육류)	66.5
－ 쇠고기	37.1
－ 돼지고기	72.6
－ 닭고기	82.4
우유 및 유제품	47.7
계 란	98.6
사 료	38.2
－ 배합사료	24.2
－ 조사료	84.6
채소류	89.6
과실류	75.3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밀·콩·옥수수·서류 등은 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순

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2호

[참고자료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신축, 개보수 비용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현황

○ 전국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현황('24.3월 기준)

(단위: 천톤/조곡)

구분	합계		정부(지자체)		농협		민간		통운(개인)		마을공동창고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합계	3,436	3,213	12	6	1,675	1,071	1,708	2,094	16	29	25	13

○ 등급별 현황('24.3월 기준)

(단위: 천톤/조곡)

구분	합계		저온		특급		1급		2급		3급이하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합계	3,436	3,213	1,163	1,539	98	249	2,034	1,320	139	105	2	-

○ 보관 현황

- '25년 3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량은 1,419천톤(국산 1,022, 수입 397)

* 재고량 중 국산은 시장 격리곡 포함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원 현황(2021~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53 (7)	9,893 (3,506)	32 (10)	12,150 (8,208)	10 (7)	10,000 (9,493)	26 (15)	9,939 (9,493)
도정공장	8 (1)	3,056 (1,500)	10 (4)	7,314 (5,240)	5 (4)	7,252 (6,905)	5 (3)	2,390 (2,160)
보관창고	45 (6)	6,837 (2,006)	22 (6)	4,836 (2,968)	5 (3)	2,748 (2,588)	21 (12)	7,549 (6,639)

* 당해연도 선정업체 기준(선정 후 포기업체 포함)

* ()은 신축 지원 개소수 및 지원금액, 이외는 개보수 지원

- 개보수비용 지원 세부사업명, 1개소당 평균 지원금액,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 등
 - 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세부)-농업종합자금(내역)-쌀가공산업육성지원(내내역)
 - 1개소당 평균 지원금액('24년 선정업체 기준): 382백만원
 - 지방비 분담률: 해당 없음

[참고자료 5] 변동직접지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유사 제도

- 개정안의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05~'19년까지 운영된 「변동직접지불제」가 있음
 - * 舊 농업소득보전법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 제2조(정의)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변동직접지불금 개요

- (대상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 농업인: 0.1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상한: 30ha)
 -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00만원 이상(상한: 50ha, 들녘: 400)
- (지급 단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차액 지급
 - * (목표가격) '05~'12년산: 170,083원/80kg, '13~'17년산: 188,000원, '18~'22년산 : 214,000원
 - ** (고정직불 단가) 100만원/ha, 1ha당 쌀 생산량인 67가마(80kg)를 기준으로 환산시 14,925원/80kg(17년산까지 63가마 기준)
 - *** (변동직불금 단가) (목표가격 - 80kg당 수확기 쌀값) × 85/100 - 80kg당 고정직불금
- (목표가격)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 산정방식 (舊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9조)>

$$\text{변경 목표 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함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실적 등

연산별*	농가수(천호)	예산액(억원)	지급총액(억원)
'19년산	641	2,384	2,336
'18년산	650	2,533	1,114
'17년산	675	10,800	5,393
'16년산	685	14,900	14,898
'15년산	685	7,193	7,262
'14년산	671	1,641	1,941
'13년산	697	200	—
'12년산	719	252	—
'11년산	740	620	—
'10년산	781	7,993	7,501
'09년산	815	5,951	5,945
'08년산	1,025	676	—
'07년산	1,016	5,330	2,791
'06년산	1,000	9,501	4,370
'05년산	984	9,096	9,007

*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10월~익년 1월까지 쌀값이 나와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익년 지급(예: '16년산 → '17년 초 지급)

[참고자료 6]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목적)**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운송, 공급 등 관리 전반을 자동화·전산화 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도모
 - * 명칭: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 **(연혁)** '20년에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이후 '21년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6월부터 본격 운영,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등의 정부양곡 관리 담당자가 시스템 사용 중
- **(제공·관리 정보)** 정부양곡 창고별 재고 입·출고 관리, 가공·수송 지시, 분야별 매출 등록, 보관·가공·수송 등 관리 비용 자동 산출·정산 등
 - * 지역·창고별 재고 파악, 업체별 가공 및 수송(산지→소비지) 물량 파악, 용도별 판매내역 등 양곡관리 업무를 전산 구현
- **(최근 5년간 운영예산)** 2020~2025년
 - ('20) 4,397백만원 → ('21) 1,171 → ('22) 462 → ('23) 574 → ('24) 575 → ('25) 597

[참고자료 7]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쌀 생산량 현황

(단위: 천톤)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량(A)	3,972	3,868	3,744	3,507	3,882	3,764	3,702	3,585
수요량(B)	3,822	3,806	3,756	3,671	3,614	3,609	3,607	3,529
초과생산량 (A-B)	150	62	△12	△164	268	155	95	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 현황

(단위: 20kg, 정곡 기준)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지 쌀값	단순 평균	48,392	47,491	54,121	53,535	46,817	미공표	미공표
	비추정 평균	48,215	47,084	53,456	52,198	45,455	50,699	46,175

주: 전국평균 수확기 산지쌀값은 10~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계산(통계청 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8]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최근 7년간(2018~2024.12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시장격리곡(미곡) 매입현황

연산	매입시기		평균가격 (조곡 ¹⁾ , 원/40kg)	매입물량 (정곡 ¹ , 천톤)	매입금액 (억원)	매입방법
2021	1차	'22.2월~4월	63,763(평균낙찰가)	143.5	3,176	입찰
	2차	'22.5월~7월	60,643(평균낙찰가)	125.3	2,617	입찰
	3차	'22.7월~9월	57,793(평균낙찰가)	100.7	2,027	입찰
	4차	'22.10월~12월	54,972(평균낙찰가)	78.6	1,502	입찰
	소계			448.1	9,322	
2022	'22.10월~'23.3월		64,530(1등급기준)	324	7,322	공공비추과병행
2023	1차	'24.1월~2월	63,120(평균매입가)	50	1,096	해외원조
	2차	'24.3월~4월	63,344(평균매입가)	50	1,103	해외원조
	3차	'24.9월	62,911(평균매입가)	50	1,092	해외원조
	소계			150	3,291	
2024	1차	'24.9월~12월	추진중	105	2,127(추정)	주정용
	2차	'24.10월~12월	63,510(1등급기준)	95	2,100(추정)	공공비추과병행
	소계			200	4,227(추정)	

주: 1)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2) 2024년산 매입금액은 잠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연산별 시장격리 물량 및 정산현황 등

(2024. 12. 31. 기준, 단위: 억원, 정곡)

구분	상환후 잔액 (A-B)	매입물량 (천톤)	매입자금 (A)	누적 상환액 (B)	상환시기
<합 계>	35,048	3,275	61,278	26,231	
■ 판매 완료('05산~'17산)	12,422	2,153	37,117	24,694	
■ '05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44	2,433	2,433	'06~'16
■ '08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00	1,714	1,714	'14~'23
■ '09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566	9,299	9,299	'15~'24
■ '10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86	1,411	1,411	'11
■ '14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1,857	240	4,716	2,859	'19~'27
■ '15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3,136	357	6,272	3,136	'20~'27
■ '16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2,751	299	4,587	1,836	'21~'27
■ '17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4,679	361	6,684	2,005	'22~'28
■ '21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경제지주)	8,754	448	9,322	568	'22~'31
■ '22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7,322	324	7,322	-	'27~'31
■ '23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2,323	150	3,291	968	'24~'29
■ '24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4,227(추정)	200	4,227(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9]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쌀 대비 소득차, 영농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평균단가(270~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 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 ①쌀과의 소득차를 보전, ②쌀의 작업 편리성을 대체할 수준의 보전(노동시간 반영), ③작물 전환에 따른 수량 감소 반영, ④기타 전환에 어려운 요소 반영(배수시설 등)

<품목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조사료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2018년	400	340	280	—
2019년	430	340	325	280
2020년	430	270	255	210

□ 예·결산 등 실적

(단위: 억원, 천ha)

연도	예산액	집행액	사업실적
2018	1,368	679	26.5
2019	1,505	837	28.6
2020	550	550	21.5

[참고자료 10] 미국종합처리장(RPC)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목적)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 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비용절감,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유통 기반구축

* RPC: Rice Processing Complex, DSC: Drying & Storage Center

[시·도별 RPC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시
합계	178	26	9	8	25	31	30	24	17	8
농협	122	19	8	6	17	19	21	13	13	6
민간	56	7	1	2	8	12	9	11	4	2

[시설능력 현황]

(단위: 천톤/벼, %)

구분	생산량	유통량(추정) (A)	연간 매입량	수확기 매입량	저장능력 (B)	저장능력 비율 (B/A)
2023년	4,898	3,527	2,171	1,811	2,011	57.0
(농협)			1,625	1,451	1,577	
(민간)			547	360	434	

* 유통량: 생산량의 72% 수준

□ (지원현황) ①RPC 시설현대화, ②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③벼 매입자금 지원

① 통합 등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노후시설 개선

* ('07~'24까지) 77개소, 1,093억원 지원, '30년까지 125개소 예정

②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농가출하편의 제고 및 품질유지

* ('95~'24까지) 1,548개소, 4,062억원 지원, '30년까지 저장능력 65% 목표('23: 57.0%)

③ 수확기 벼 매입확대를 통해 농가 출하가격 및 RPC 경영안정 지원(융자)

* ('95) 860억원 → ('09) 10,000 → ('14~'23) 12,308 → ('24~'25) 13,308 / 추가증액 지원('15: 1천억원, '16: 1.5, '17: 1.2)

[참고자료 11] 전락작물산업화 예산 현황: 2024~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4	2025
전락작물산업화 (2131-351)			
(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및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 통합)			
- 교육·컨설팅지원	밀·콩·가루쌀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6,325	6,850
- 시설·장비지원	밀·콩·가루쌀 등 논타작물재배 및 밭작물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17,500	17,500
- 사업다각화 지원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	7,134	6,183
-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밀·콩 등 논 타작물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성과 확산	1,825	1,825
- 제품화패키지 지원	국산 밀·콩·가루쌀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및 수출·판촉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제비용을 종합 지원하여 수요발굴 및 소비	8,380	9,850
- 전락작물가공확대 지원	국산 밀·가루쌀 산업초기 체분기반 조성 및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업체 대상 추가 사용량에 대하여 체분비용 지원	3,200	6,400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권역별 콩 가공·소비 기반을 조성하여 국산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가공-소비 기반 조성을 지원	-	3,200
-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 *이관사업	논에 재배하는 시설원예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용수공급기반을 구축하여 논에서의 타작물(시설원예작물) 재배 확산 유도	900	1,500

주: 2024년부터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 내역사업은 농촌용수개발 세부사업에서 전락작물산업화 세부사업으로 내역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1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관련 예산 현황:
2024~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내용	2024	2025
쌀 소비기반구축 (2131-369) (구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쌀 소비기반구축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습관 형성 교육, 소비 활성화 지원,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 지원	3,412	2,699
-천원의 아침밥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지원	4,846	9,344
전략작물산업화 (2131-350)			
-제품화 패키지 지원	국산 밀·콩·가루쌀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등 지원	8,380	9,850
-전략작물 가공확대지원	국산 밀, 가루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업체 대상 가격차 보전, 제분 비용 지원	3,200 (‘밀 가공확대지원’ 이관)	6,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